##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4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상훈·구자근

김위상 · 김성원 · 윤상현

박정훈 • 이철규 • 김석기

정동만 • 우재준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 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 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 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6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		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		
16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	16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			
관을 말한다.		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마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		
	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		
	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		
	<u>기관</u>		
<u>마.</u> (생 략)	<u>바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		